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 월 3 일

여수시장 2024.7.3



여수시 조례 제2103호

붙임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 2."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 3."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2.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종교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 또는 여수시 고문 노무사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